

의안 번호	1536	【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9. 4. 5.(금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4. 5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4. 23.(화)

2. 제안설명 요지(주민자치국장 조수관)

가. 제안이유

중구와 시 교육청, 강북교육지원청,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, 지역 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고,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용어정의, 적용범위(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)
- 혁신교육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보조금 지원(안 제5조 및 제6조)
-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)

다. 근거법규

「청소년 기본법」 제48조, 제48조의2 및 「인성교육진흥법」 제4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계화)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청소년 기본법」 및 「인성교육진흥법」에 따라 민·관·학이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혁신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,
-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□ 「청소년 기본법」

제48조(학교교육 등과의 연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·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,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48조의2(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(全人的) 성장·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인성교육진흥법」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